

꿈드림정기예탁금 특약

일부개정 2014.12.30

제1조(특약의 적용) 꿈드림정기예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는 이 특약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예금의 명칭) 이 예금은 「꿈드림○○예탁금」의 범위(꿈드림장학예탁금, 꿈드림결혼예탁금 등)내에서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제4조(이율) ①이 예금의 자동연장에 따른 이율은 계약만료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탁금 1년에 해당하는 이율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응답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응답일로 한다.

②자동 연장후 연장된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연장당시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5조(자동연장에 따른 원금) 이 예금이 자동 연장됨에 따른 재예치원금은 최초계약시의 원금으로 하며, 기발생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는 추후 이자 청구시 또는 해지 요청시 기간중 발생된 이자와 합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예금주 명의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세금우대의 적용)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의 대상 예금이 될 수 있다.<개정 2014.12.30>

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약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자동연장되는 예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특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자동 연장한 예금에 대하여는 이 특약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기간의 만기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